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2015가단5318091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9 선고 2016나5740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2015가단5318091 판결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1. A

2. B

3. C 주식회사

변론 종결 2016. 6. 22.

판결 선고 2016. 8. 10.

주 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984,486원과 그 중 40,135,830원에 대하여 2015. 9. 4.부터 2015. 10. 2.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 주식회사와 피고 B 사이에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1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B에게 별지[2] 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위 채권의 양도통지를 하라.

3.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 A, B: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

피고 C 주식회사 :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피고 A, B에 대한 구상금 청구

가. 신용보증약정과 대출

1) 원고는 2010. 6. 11. 'D'을 운영하는 피고 A과 보증금액 4,000만원, 보증기한 2011. 6.

10.까지(이후 2015. 6. 5.까지 네 차례 연장됨)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은 2010. 6. 17.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 한다)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2)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A은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원고가 정한 요율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위약금 등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2012. 12. 1. 이후의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다.

나. 보증사고 발생과 대위변제

1) 피고 B은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이 피고 B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B은 이를 담보로 제일은행에서 돈을 빌렸으나 2015. 2. 12. 대출 원금 지급을 연체하였다.

2) 피고 A은 그 한 달 후인 2015. 3. 12. 관계회사 사고에 의한 부실(피고 B의 위 대출금 연체)을 이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피고 A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제일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피고 A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5. 9. 4. 제일은행에 대출 원리금 40,135,83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피고 A은 위 보증기한 내 보증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이에 따른 위약금 137,930원[① $40,000,000\text{원} \times 1.4\%(\text{적용보증요율 } 0.9\% + 0.5\%) \times 27/365(2015. 6. 6. \sim 2015. 7. 2.) = 41,420\text{원}$, ② $39,941,082\text{원} \times 1.4\%(\text{적용보증요율 } 0.9\% + 0.5\%) \times 63/365(2015. 7. 3. \sim 2015. 9. 3.) = 96,510\text{원}$ 합계 137,930원(①+②), 2015. 7. 2. 58,918원을 보증해지 하였음. 10원 미만 버림]이 발생하였다.

4) 원고는 위 구상채권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등을 하면서 그 비용으로 2015. 5. 6. 260,820원, 2015. 6. 8. 299,850원, 2015. 7. 7. 167,225원 합계 727,895원을 지출하였으나 그 중 17,169원을 회수하여 710,726원이 대지급금으로 남아있다.

[인정 근거] 자백간주

다. 구상의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40,135,830원과 위약금 137,930원, 대지급금 710,726원을 합한 40,984,486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40,135,83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9. 4.부터 위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5. 10. 2.까지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가. 피고 B의 처분행위와 피보전채권의 발생

1) 인정 사실 가) 피고 A, B은 부부이다. 피고 A은 'D'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 B은

'E'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 B은 피고 A의 연대보증 아래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2015. 2. 12. 대출 원금 지급을 지체하여 2015. 3. 12.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고, 이러한 사실이 2015. 3. 12. 원고에게 통보되었다. 이후 피고 B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서울신용보증재단이 2015. 8. 11. 피고 B을 대위하여 대출금을 변제하였는데, 2014. 10. 14. 기준으로 피고 B의 채무는 169,286,499원이었다.

다)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피고 A이 주채무(원고가 신용보증한 제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또는 피고 A이 연대보증한 신용보증기업에 대하여 원고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고 A, B에 대한 별도의 통지나 최고 없이 원고가 보증한 금액을 사전구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피고 B은 2014. 10. 14. E에 물품을 공급하던 피고 회사와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0. 17.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억 5,000만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피고 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후 피고 A, B에게 물품을 추가로 공급하다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2015. 2.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바) 제일은행은 2015. 5. 5.자 피고 A의 이자 연체를 이유로 2015. 6. 1.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 12, 15,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의 E 대출금이 연체되고, 피고 A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2015. 3. 12.경에는 원고의 사전구상금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늦어도 제일은행이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한 2015. 6. 1.에는 원고의 사전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다.

피고 B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는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 B이 이를 연대보증하였기 때문에 신용보증사고 발생 전에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발생되어 있었다. 피고 A과 B은 부부로 피고 A(E는 피고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 운영자는 피고 A인 것으로 보임)이 피고 회사로부터 담보제공을 요구받고, 대출금 이자 지급을 연체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후 5개월 내지 7개월여 만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까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 A이 가까운 장래에 사전구상금채무를 부담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원고가 2015. 9. 4.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사전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피고 B의 무자력과 사해의사

1) 인정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B의 재산은 아래와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다.

① 적극재산 합계 1,143,500,000원

- 이 사건 부동산 11억원(2015. 2. 23. 기준 감정평가액)
- 용인시 처인구 F 답 3,098m² 중 1/4 지분 43,500,000원(2008. 12. 10. 거래가액)

② 소극재산 합계 1,302,558,060원

- 원고 40,000,000원
-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499,374,746원
- 주식회사 오에스비저축은행 334,524,631원
- 서울신용보증재단 169,286,499원
- 피고 회사 259,372,184원(피고 회사의 주장에 따른 금액)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 17, 18, 19, 20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어느 특정 채권자를 위해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5656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연대보증인에게 처분행위 당시 사해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자산상태가 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는가 하는 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20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B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고 B이 남편인 피고 A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사정과 신용보증약정상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자신의 연대보증채무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재산을 피고 회사에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회사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계속적 물품거래를 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무렵 259,372,183원의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 회사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물품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 B이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부득이하게 담보를 제공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가 아니다.

2) 판단 피고 회사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을 제2호증)를 보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인 2014. 10. 31.부터 2015. 7. 28.까지 피고 A, B에게 94,489,233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그 대부분은 E가 아니라 D에 공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 B의 채무 변제력을 높이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그런데 사업자등록 명義와 관계없이 E도 피고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피고 B인 것으로 보아 피고 B이 피고 A의 물품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을 개연성이 있고, 피고 회사도 그런 점을 전제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위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주채무자의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주채무자가 그 채권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하게 된 경우 보증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처음에는 피고 B와 2010년부터 계속적 물품거래를 하면서 발생한 6억 원의 채무 중 3억 5,000만 원을 받지 못해 담보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다가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의 채권 2억 6,000여만 원과 추가 공급한 물품대금 9,000여만 원을 합하여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주장을 바꾼 점이나 피고 회사의 채권액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 회사의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에 피고 A, B에게 공급한 94,489,233원의 물품대금 중 25,889,679원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한 이후에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을 제2호증), 피고 회사가 경매신청 이후에도 물품을 공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세금계산서가 진정한 것인지도 다소 의문이 있다(피고 회사가 경매절차에서 신고한 채권은 원금 기준으로 287,627,180원인데, 피고 회사가 경매신청을 했다는 것은 변제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고, 위 채권액으로 보아 2,500여만 원의 물건을 더 공급한다고 해서 회생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하기도 어렵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1) 인정 사실 가) 피고 회사의 신청에 의해 진행된 서울중앙지방법원 G, H(중복)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경매법원은 2015. 12. 17. 매각대금 중 선순위 근저당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38,243,025원을 4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회사에 전액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805443호로 피고 회사를 채무자,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 회사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배당기일에 받을 배당금에 대한 출급청구채권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았고, 위 가처분결정은 2015. 6. 22.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것인바,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해야 한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회사와 피고 B의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 회사는 피고 B에게 별지[2] 기재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신용무

별지